

 <b>보건복지부</b>	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
배 포 일	2018. 4. 19. / (총 2매)		담당부서	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
보육사업 기획과	과 장	이 윤 신	전 화	044-202-3560
	담당자	민 차 영		044-202-3562
보육기반과	과 장	김 수 영		044-202-3580
	담당자	박 춘 서		044-202-3587

## 고농도 미세먼지 “나쁨” 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

- 「보육사업안내」 개정,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의 출석 특례 마련 -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  - 오전 등원 시간(9시 이전),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“나쁨” 이상 발생\* 시, 부모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,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.
    - \*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<sub>10</sub> 81 $\mu$ g/m<sup>3</sup>, PM<sub>2.5</sub> 36 $\mu$ g/m<sup>3</sup> 이상 1시간 이상 지속
  - 현재까지는 질병 등의 사유로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규정만 있었으나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별도로 추가 인정한다.
- 또한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·배포하고(4월중),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·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.

**참고1**      **보육사업안내 개정안**

현 행	개정(안)
<p>* p.321</p> <p>○ (출석인정 특례) <u>아래와 같은 경우,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</u></p> <p>- (현행과 같음)</p> <p>- &lt;신설&gt;</p>	<p>* p.321</p> <p>○ (출석인정 특례) <u>아래와 같은 경우,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</u></p> <p>- (현행과 같음)</p> <p>- <u>오전 등원시간 내(09:00 이전)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*(나쁨 이상)으로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하는 경우,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</u></p> <p>* <u>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<sub>10</sub> 81<math>\mu</math>g/m<sup>3</sup>, PM<sub>2.5</sub> 36<math>\mu</math>g/m<sup>3</sup> 이상 1시간 이상 지속</u></p> <p>* <u>어린이집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현황을 시·군·구청장에게 제출하고, 시·군·구에서는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먼지 “나쁨 이상” 발생 데이터를 참고하여 출결 현황을 확인</u></p>